

#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225-1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3. .

제안자 : 강성삼 의원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변경 조문을 현행 조문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문의 용어 통일에 관한 사항(안 제42조제1항제6호)

## 3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**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1항제6호 중 “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하고,”를 “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하고”로, “가구는 매월 가정용 15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”를 “가구는 가정용 1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”으로 한다.

